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산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호서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위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

1. “산학협력”이란 대학 또는 산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 5. 1)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다.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2. “산학협력계약”이란 대학 또는 산단의 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 나.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라 함은 대학 또는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함은 대학 또는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축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등)을 준용하기로 한다.(개정 2015. 5. 1)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산학부총장, 산학협력단장, 부단장 및 직무대행) ①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산단의 운영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산단을 대표한다. 다만, 총장은 산학부총장으

로 하여금 총장의 산단 지도감독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개정 2017. 3. 1)

② 단장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5. 14)

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④ 삭제(2015. 5. 1)

제5조(산학감사실) ① 산단 자체 감사를 위하여 단장 직속으로 산학감사실을 설치·운영하며 산학감사실장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 5. 14, 개정 2017. 3. 1)

② 산학감사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트장을 두고 파트장은 주사 이상의 대학 직원 또는 산단 소속 선임매니저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 5. 14, 개정 2015. 5. 1, 2017. 3. 1)

③ 산학감사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5. 14, 개정 2015. 5. 1, 2017. 3. 1)

1. 산단 운영전반에 걸친 정기 감사 실시(년 1회 이상)
2. 산단 연구비운영에 관한 상시 감사 실시
3. 기타 총장 및 단장의 지시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④ 산단 감사실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 5. 14, 개정 2017. 3. 1)

제6조(하부조직) ① 산단에 산학행정팀, 연구팀,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0, 2015. 5. 1, 2017. 3. 1, 2021. 8. 26, 2023. 8. 10)

② 팀장은 주사 이상의 대학 직원 또는 산단 소속 책임매니저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③ 각 팀 및 사업단(센터)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파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파트장은 주사 이상의 대학 직원 또는 산단 소속 선임매니저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삭제 2015. 1. 1, 신설 2017. 3. 1)

④ 산단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1. 부설연구소 및 센터
2. 국책사업단 또는 산학협력관련 사업단
3. 기타 총장 또는 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

⑤ 산단의 조직 기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3. 1)

제7조(삭제 2015. 1. 1)

제8조(산학행정팀) 산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5. 14., 2013. 2. 20., 2015. 5. 1., 2017. 3. 1, 2021. 8. 26, 2023. 8. 10, 2024. 2. 2.)

1. <삭제 2021. 8. 26>
2. 산단 관련 규정의 통합 관리
3. 단장 직인관수 및 법인 사무 관련 제반 업무
4. 산단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지원
5. 산단의 발전기금 관리
6. 산단 소속 직원(연구원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인사, 평가, 상벌 및 근태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산단 소속 직원(연구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8. <삭제 2021. 8. 26>
9. 산단 예·결산 및 세무업무
10. 산단 검수 및 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11. <삭제 2021. 8. 26>
12. <삭제 2021. 8. 26>
13. <삭제 2021. 8. 26>
14. 산학협력단 조직 관리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5.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16. 산학협력단 자금지출 및 현황 관리
17. 산학협력단 전기, 소방, 위험물 등 안전점검 및 각종 유지보수
18. 산학협력단 자체 수익사업의 기획 및 운영
19.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0.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 관리 및 지원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9조(연구팀) 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2023.

8. 10, 2024. 2. 2.)

1. 연구정책 계획 업무
2. 각종 연구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업무
3. 연구지원제도 개선 및 기획 업무
4. <삭제 2023. 8. 10>
5. <삭제 2023. 8. 10>
6. <삭제 2023. 8. 10>
7. 기타 교비연구지원제도 운영 업무
8. 연구조교 배정 및 과제 관리 업무
9. 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번역 및 교정 지원업무
10. 학술 회의 참가 및 개최 지원 업무
11. 대학 부설연구소 관련 업무
12. 연구과제 수주와 관련한 대외 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관리
13. 연구과제의 기획과 관련한 전문 분석자료 제공 및 연구계획서 작성 지원
14. 교외 연구과제의 관리(연구 노트 포함)
15. 교외 연구비 관리(중앙관리)
16. 연구 간접비의 징수
17. 교외연구 관련 각종 제위원회의 운영
18. <삭제 2023. 8. 10>
19. 연구 진흥 및 연구과제 기획에 관한 업무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삭제 2015. 1. 1)

제10조의2(삭제 2015. 1. 1)

제10조의3(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7. 3. 1, 2021. 8. 26, 2023. 8. 10, 2024. 2. 2.)

1.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의 기획 참여, 신청 및 유치 지원
2.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 수집, 분석 및 관리
3.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개별 국책사업단(센터 포함)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
5. <삭제 2024. 2. 2.>
6. <삭제 2024. 2. 2.>
7. <삭제 2024. 2. 2.>
8. <삭제 2024. 2. 2.>
9. <삭제 2024. 2. 2.>
10. <삭제 2024. 2. 2.>
11. <삭제 2024. 2. 2.>
12. 발전기금 조성
13. 기업협력지원 및 가족기업 관리
14. <삭제 2024. 2. 2.>
15. <삭제 2021. 8. 26>
16. <삭제 2021. 8. 26>
17. <삭제 2021. 8. 26>
18. <삭제 2024. 2. 2.>
19. <삭제 2024. 2. 2.>
20. 산학협력라운지 운영 및 관리
21. <삭제 2024. 2. 2.>
22. <삭제 2023. 8. 10>
2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의4(산학협력정보담당실) 산학협력정보담당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2. 9.)

1.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정보수집·공유 및 통합 관리
2.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 추진
3. 학내·외 기업지원 서비스 통합 관리
4. 산학연협력 정보담당 위원회 운영

제10조의5(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화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8. 10.)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계획수립
2. 기술지주회사 연계협력 및 활성화 지원
3. 보유 기술 분석, 가치 및 시장성 평가
4. 교원, 학생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5. 기술이전 관리 업무
6.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 및 관리업무
7. 지식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8. 우수 지식재산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9. 지식재산 관련 제규정 및 시스템 관리

10.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관련 위원회 운영 업무
11. 기술사업화 관련 투자대상 발굴, 검토 업무
12.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활동에 관한 업무
13. 대학 내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간 상호 협력 업무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의6(검인증기술원) 검인증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 2. 2.)

1. 신규 검인증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2. 검인증 분야 국책사업 유치 추진
3. 검인증 분야 기관 협력 업무
4.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용 장비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총괄 운영
5. 대학 내 고가 기자재 및 연구 장비에 대한 산업체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6. 산학협력단의 장비도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 실시
7. 산학협력단 내 장비관련 부서의 업무 통할
8. 장비를 활용한 자체 수익사업의 기획 및 추진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의7(벤처교육원) 벤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 2. 2.)

1. 신규 비학위 교육과정 기획 및 계획수립
2. 교육 관련 국책사업 유치 및 운영
3.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공유협력 강화 등 대관업무
4. 국내·외 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
5. 산업체 계약형학과, 위탁교육 유치 및 운영(CEO과정 등 포함)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1조(연구원 및 직원 등의 임면) 산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구원과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제 3 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산학협력분야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산업계(정·관계 포함)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5. 14)

③ 당연직위원은 단장, 부단장, 법무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재무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2018. 2. 23, 2021. 3. 1)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서무(회의록 작성 및 보존 포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행정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21 8. 26)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1)

1. 산학협력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5. 14)
2. 산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 14)
6. 산단 산하 개별 국책사업단(연구소 및 센터 등 포함)의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 14)
7. 기타 산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5. 14)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2.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의 보고를 받은 때

제16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장 변경 2015. 5. 1)

제17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②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5. 14)

③ 당연직위원은 단장, 사무처장, 부단장, 산학감사실장, 산학행정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2. 20, 2015. 5. 1, 2017. 3. 1, 2021. 8. 26, 2023. 8. 10)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서무(회의록 작성 및 보존 포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총무 파트장으로 한다.(변경 2015. 5. 1, 2017. 3. 1, 2021. 8. 26)

제18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1)

1. 산단 소속 직원(연구원 포함)의 승진에 관한 사항
2. 산단 소속 직원(연구원 포함)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산단 소속 직원(연구원 포함)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원 및 대학으로부터의 산단 파견 직원에 대한 대학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 5. 1)

제20조(소집)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5. 1)

제21조(제척사유)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에서 제척하기로 한다.

1. 심의 대상자가 본인인 경우
2.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이해 관계에 있는 경우

제22조(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5. 1)

제23조(의견조정권) 단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정책적 필요성 등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된 사항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재심을 하도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개정 2015. 5. 1)

제 5 장 산학협력단 산하 개별 국책 사업의 유치 및 운영

제24조(국책사업의 유치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 산하의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기획·공모·발주되어지는 산단 산하 국책사업(교원의 연구개발 사업제외)의 유치·지원 업무는 산학협력팀에서 주관한다.(개정 2015. 5. 1, 2017. 3. 1, 2021. 8. 26, 2023. 8. 10)

② 산학협력팀에서는 국책사업의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정보의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대학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 2021. 8. 26, 2023. 8. 10)

③ 국책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3. 1)

④ (삭제 2017. 3. 1)

⑤ (삭제 2017. 3. 1)

⑥ (삭제 2017. 3. 1)

⑦ (삭제 2017. 3. 1)

⑧ (삭제 2017. 3. 1)

⑨ (삭제 2017. 3. 1)

제25조(국책사업의 관리 등) ① 유치가 확정된 국책사업의 총괄책임자(사업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운영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대학 및 산단의 운영규정 과 세부운영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② 산단 산하 국책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단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국책사업운영을 통하여 대학 또는 산단으로의 유·무형의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③ 국책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 운영, 인사, 회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④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책사업 책임자는 단장의 지휘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5. 5. 1)

제26조(사업기간이 종료된 국책사업의 정리 등) 국책사업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정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단에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1. 해당 사업 소속 직원의 정리 방안
2. 해당 사업의 성과 활용기간 동안의 대응 시스템
3. 사업 추진을 통하여 발생된 유·무형의 성과에 대한 산단으로의 이관 방안
4. 기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 등

제27조(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연구소 및 센터 등]의 관리 등)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연구소 및 센터 등)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본 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2012. 5. 14)

제 6 장 산학협력단 운영재정

제28조(기본재산 등) 산단의 기본재산은 정관 제12조와 같다.(개정 2017. 3. 1)

제29조(수입 및 지출 등) ① 산단의 수입은 정관 제13조, 지출은 정관 제14조와 같다.(개정 2017. 3. 1)

② 산단의 수입원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명은 정관 제16조에 따라 단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1)

1. 출납원은 재무회계파트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5. 1, 2017. 3. 1)
2. 수입원은 산학행정팀장으로 지출원은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14, 2017. 3. 1, 2021. 8. 26)
- ③ 정관 제17조제2항의 현금지급에 의한 소액지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예·결산 등) 산단의 예·결산은 정관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따르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 3. 1)

제 7 장 보 칙

제31조(세부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산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단장은 세부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② 산단 하부조직 및 기관에 필요시 각종 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③ 기존에 운영 중인 산단 각종 세부운영규칙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개정 사항과 연동하여 본 규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3. 1)

부 칙<2008. 8. 18.>

- ①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이전의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은 폐지하기로 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3)

- 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법무실’을 ‘감사실’로 하고, ‘사무처’를 ‘사무처’와 ‘재무처’로 분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